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748
----------	-------

발의연월일 : 2026. 8. 25.

발 의 자 : 윤준병 · 박희승 · 김성범
이춘석 · 김의겸 · 박홍배
송옥주 · 최혁진 · 양부남
권칠승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50조제1항은 국회의 회의 공개의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회의 비공개에 대한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이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정책결정은 국민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그 정책 결정 과정이 공개되어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임.

그런데 현행법은 정보위원회의 경우 회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되, 공청회 또는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대하여 지난 2022년 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정보위원회의 회의 일체를 비공개하도록 정함으로써 정보위원회 활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 제50조제1항에 위배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을 하였음(헌

법재판소 2022. 1. 27. 2018헌마1162, 2020헌바428 결정).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현행법상 조문의 효력은 상실되어 현재 정보위원회에도 일반적인 위원회와 동일하게 회의공개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현행법을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제1항 삭제 등).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1항을 삭제한다.

제7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본회의”는 “위원회”로, “의장”은 “위원장”으로,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간사”로, “의원”은 “위원”으로 각각 본다.

② 위원회에서 동의(動議)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으며, 표결은 거수로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①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청회 또는 제65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54조의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삭 제>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1조(준용규정) 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6장과 제7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에서의 동의(動議)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으며, 표결은 거수로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신 설>	제71조(준용규정) ① ----- ----- ----- ----- ----- <단서 삭제> 이 경우 “본회의”는 “위원회”로, “의장”은 “위원장”으로,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간사”로, “의원”은 “위원”으로 각각 본다. ② 위원회에서의 동의(動議)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으며, 표결

	은 거수로 할 수 있다.
--	---------------